

제 162 호

행 정 명 령

주 정부 계약업체에 의한 임금 평등 보장

전문: 주 법률에서는 고용주에게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인종, 신조, 피부색, 출신국, 성별, 연령, 장애 및 혼인 유무에 기초해서 고용주가 피용자나 구직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더 나아가, 주 법률에서는 여성이 동일한 업무 수행에 대해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뉴욕주는 매년 수천 명의 피용자를 채용하는 주 전역의 벤더들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다.

행정법(Executive Law) 15-A 항에서는 정부 계약업체들이 서비스, 물품 및 건설을 위한 주 정부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인력의 구성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행정법 15-A 항에 따라 계약업체들이 제출하는 정보에는 채용된 피용자들에 대한 급여 정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결과, 이 정보는 급여 지급의 불평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은 현재도 여전히 유사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고 있으며, 인종적 소수자 및 민족적 소수자도 유사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 그들과 동등한 사람보다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

주 정부는 뉴욕주에서 이러한 차별적 임금 지급 실무 패턴이 정면으로 직시되고 대처되며, 영속화되지 않도록 이끌고 보장할 책임이 있다.

주 정부 계약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들의 보수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주 정부 계약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고, 동일한 업무 수행에 대해 유사한 임금을 지급받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헌법과 뉴욕주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A. 정의

- 여기에서 사용될 때, 다음 용어들은 행정법 310 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계약업체”, “주 정부기관”, “주 당국” 및 “주 정부 계약”.

2. “하청계약”은 주 정부 계약의 원청계약업체가 해당 주 정부 계약과 관련해서 해당 원청계약업체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그를 위해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일체의 업체와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을 의미한다.

B. 정부기관 및 당국의 책임

1. 주 정부기관과 당국은 2017년 6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표되고 체결되는 모든 주 정부 계약, 합의 및 조달에서, 계약업체들이 주 정부 계약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계약업체의 각 피용자의 직책과 급여를 포함시키거나, 만약 해당 계약업체가 직접적으로 주 정부 계약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업체의 피용자 전원의 직책과 급여를 포함시킨 세부 인력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는 현재 이러한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 요구되고 있는 평등 고용 기회 정보에 추가해서 요구되는 것이다.
2. 아울러, 주 정부기관과 당국은 2017년 6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표되고 체결되는 모든 주 정부 계약, 합의 및 조달에서 모든 하청업체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피용자들에 대해 동일한 요건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3. 이러한 정보는 계약금액이 25,000 달러를 초과하는 원청계약에 대해서는 분기 단위로 주 정부기관 및 당국에 보고되어야 하며, 100,000 달러를 초과하는 건설공사 원청계약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보고되어야 한다.
4. 이러한 정보는 뉴욕주 경제개발부가 요구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이는 2017년 6월 1일까지 모든 정부기관 및 당국에 보고될 것이다.

2017년 1월 9일에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이 명령을 발령한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실장